

현행

개정(안)

[별표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호 관련)

[별표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호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로 한정한다)	①높이 762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나. 롤러스케이트	①롤러스케이트
	다. 바퀴 달린 운동화	①바퀴 달린 운동화
	라. 모터 달린 보드	①모터 달린 보드
	마. 창문 블라인드	①창문 블라인드
	바. 쌍꺼풀용 테이프	①쌍꺼풀용 테이프
	사. 속눈썹 열 성형기	①속눈썹 열 성형기
	아. 가(假) 속눈썹(인조 속눈썹)	①가(假) 속눈썹(인조 속눈썹)
	자. 쇼핑카트	①쇼핑카트
	차. 휴대용 사다리	①주택용 사다리 ②도배용 사다리 ③원예용 사다리 ④계단식 소형 사다리
	카. 인라인롤러스케이트	①인라인롤러스케이트
	타. 키펠드	①키펠드

분류	품목	세부품목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로 한정한다)	①높이 762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나. 롤러스케이트	①롤러스케이트
	다. 바퀴 달린 운동화	①바퀴 달린 운동화
	라. 삭제	
	마. 창문 블라인드	①창문 블라인드
	바. 쌍꺼풀용 테이프	①쌍꺼풀용 테이프
	사. 속눈썹 열 성형기	①속눈썹 열 성형기
	아. 가(假) 속눈썹(인조 속눈썹)	①가(假) 속눈썹(인조 속눈썹)
	자. 쇼핑카트	①쇼핑카트
	차. 휴대용 사다리	①주택용 사다리 ②도배용 사다리 ③원예용 사다리 ④계단식 소형 사다리
	카. 인라인롤러스케이트	①인라인롤러스케이트
	타. 키펠드	①키펠드

현행

[별표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①책상 및 테이블 ②의자 ③수납가구 ④침대 ⑤싱크대 ⑥소파 ⑦기타 가구류
	나. 간이빨래걸이	①간이 빨래걸이
	다. 선글라스	①선글라스
	라. 안경테	①안경테
	마.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①텐트 ②난방용 텐트
	(생략)	
	더. 휴대용 경보기	①휴대용 경보기
	러. 접촉성 금속장신구	①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지,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머. 벽지 및 종이장판지	①벽지 ②종이장판지
	버. 감열지	①감열지

개정(안)

[별표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분류	품목	세부품목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①책상 및 테이블 ②의자 ③수납가구 ④침대 ⑤싱크대 ⑥소파 ⑦기타 가구류
	나. 간이빨래걸이	①간이 빨래걸이
	다. 선글라스	①선글라스
	라. 안경테	①안경테
	마.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한다)	①텐트 ②난방용 텐트
	(생략)	
	더. 휴대용 경보기	①휴대용 경보기
	러. 접촉성 금속장신구	①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지,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머. 벽지 및 종이장판지	①벽지 ②종이장판지
	버. 감열지	①감열지
	서. 모터 달린 보드	①모터 달린 보드

현행

[별표1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재질별	목재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로 한정한다)	재질별	목재	보통합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가죽소재	
		종류별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생략)				
라. 모터 달린 보드	종류별	보드 재료별	금속(알루미늄 등)보드, 나무	
		모터의 배기량별	33cc, 40cc, 43cc, 기타	
		기구 구성체별	일체형, 분리형	
		바퀴 수별	4바퀴, 3바퀴, 2바퀴, 기타	
		구동 방식별	1륜구동, 2륜구동, 기타	
마. 창문 블라인드	-		-	
(생략)				
타. 킷보드	종류별	바퀴 수별	바퀴 2개, 바퀴 3개 이상	
		구동 방식별	수동식, 전동식	
	재료별	-		
	규격별	최대하중(Kg)		
	모양별	-		

개정(안)

[별표1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재질별	목재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으로 한정한다)	재질별	목재	보통합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가죽소재	
		종류별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생략)				
라. 삭제				
마. 창문 블라인드	-		-	
(생략)				
타. 킷보드	종류별	바퀴 수별	바퀴 2개, 바퀴 3개 이상	
		구동 방식별	수동식, 전동식	
	재료별	-		
	규격별	최대하중(Kg)		
	모양별	-		

현행

[별표1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재질별	목재	보통합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가죽소재		
		종류별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싱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		
	나. 간이빨래걸이	-	-		
	다. 선글라스	종류별	열은색 선글라스, 일반 선글라스,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생략)				
	머. 벽지 및 종이장판지	종류별	벽지, 종이장판지		
			재질별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금속박제	
	버. 감열지	-	-		

개정(안)

[별표1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분류	품목명	모델구분		세부기준	
2. 생활	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재질별	목재	보통합판, 특수가공치장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가죽소재		
		종류별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싱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		
	나. 간이빨래걸이	-	-		
	다. 선글라스	종류별	열은색 선글라스, 일반 선글라스,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		
	(생략)				
	머. 벽지 및 종이장판지	종류별	벽지, 종이장판지		
			재질별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금속박제	
	버. 감열지	-	-		
	서. 모터 달린 보드	종류별	보드 재료별	금속(알루미늄 등)보드, 나무	
모터의 배기량별			33cc, 40cc, 43cc, 기타		
기구 구성체별			일체형, 분리형		
바퀴 수별			4바퀴, 3바퀴, 2바퀴, 기타		
구동 방식별			1륜구동, 2륜구동, 기타		

현행

개정(안)

[별표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제7조 관련)

[별표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제7조 관련)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기준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기준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지역 : _____, 마셜군도, _____솔로몬군도, _____
_____회지_등

(1) 아시아 지역 : _____, ~~마셜군도~~ 마셜제도, _____~~솔로몬군도~~솔로몬제도, _____~~회지~~ 피지 등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유럽지역 : 그루지아, _____
_____ 등

(3) 유럽지역 : ~~크루지아~~ 조지아, _____~~터키~~튀르키예_
_____ 등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아프리카 지역 : __, 남아프리카, _____, 자이르, _____
중앙아프리카, _____
__ 등

(5) 아프리카 지역 : __,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_____, ~~자이르~~ 콩고민주공화국, _____~~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_____ 등

(6) (생략)

(6) (현행과 같음)

나.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기준

나.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기준

나) ②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코 드
일회용 기저귀	4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코 드
일회용 기저귀	41

현행	개정(안)
<p>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1) 아시아 지역 : _____, 마샬군도, _____솔로몬군도, _____ _____휘지 등</p> <p>(2) (생략)</p> <p>(3) 유럽지역 : 그루지아, _____ _____ 등</p> <p>(4) (생략)</p> <p>(5) 아프리카 지역 : __, 남아프리카, _____, 자이르, _____ _____중앙아프리카, _____ _____ 등</p> <p>(6) (생략)</p>	<p>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1) 아시아 지역 : _____, 마샬군도 마샬제도, _____솔로 몬군도솔로몬제도, _____휘자 피지 등</p> <p>(2) (현행과 같음)</p> <p>(3) 유럽지역 : 크루지아 조지아, _____터키튀르키예_ _____ 등</p> <p>(4) (현행과 같음)</p> <p>(5) 아프리카 지역 : __,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_____, 자이르 콩고민주공화국, _____중앙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_____ 등</p> <p>(6) (현행과 같음)</p>
<p>나.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 여기준</p> <p>1) 생략</p> <p>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식별방법 가) ~ 사) 생략</p> <p>아) ⑧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안 전확인신고서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의 내용이 변 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함 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생활용 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라목에 따라 새 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의 번호와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⑧란에 “ch” 를 표시한다.</p>	<p>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또한, 생활 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라목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의 번호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⑧란에 “ch” 를 표시한다.</p>